

◆ 2022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정답과 해설 - '가' 책형

1. 정답 ④

해설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미국사회에 성공목표를 부의 성취로 보고, 이를 달성하려는 합법적 수단이 결여된 하류계층이 비합법적 수단인 범죄를 범한다고 주장하여, 합법적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는 상류층이 실제로 범하는 범죄나 성공목표와 무관한 걱정범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정답 ②

범죄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범죄를 범하므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료(치료,갱생)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②

4D 중 비시설수용은 시설구금에 따른 낙인이나 폐해를 막기위해 소년은 가급적 시설수용이 아닌 각종 사회내 처우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 같은 소년 전담시설의 수용은 비시설수용이 아니다.

4. 정답 ③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때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법 제114조).

5. 정답 ①

점수제에는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가 있고, 고사제는 점수제가 아니라 기간제이다.

6. 정답 ①

다이버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인데 이는 구금형에 따른 낙인효과는 방지할 수 있으나 사회통제망(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7. 정답 ②

블럼스타인의 과밀수용 해소전략 중 구금인구 감소전략은 교정시설 입소를 억제하거나 출소를 촉진하는 전략인데, 이는 형벌의 제지효과가 형벌의 엄중성 보다는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벌의 엄중성을 강조하여 구금형에 처함으로서 과밀수용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구금형이 아닌 벌금이나 사회내 처우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이다.

8. 정답 ①

노무작업은 수용자의 노무만 제공하면 되므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제품판로

에 대한 부담도 없다.

- ② 노무작업은 직영작업과 달리 외부인의 관여가 가장 심하여 행형상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
- ③ 도급작업은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경우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나,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 ④ 도급작업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과의 입찰경쟁으로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9. 정답 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10. 정답 ②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결수용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11. 정답 ②

라이스(Reiss)와 나이(Nye)는 통제이론 중 개인 및 사회통제이론을 주장하였다.
서덜랜드는 학습이론인 차별적 접촉이론, 에그뉴는 일반긴장이론, 베커는 낙인이론을 주장하였다.

12. 정답 ④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49조).

13. 정답 ②

허쉬는 사회유대(통제)이론을 주장하여 개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 때문이라고 하였다.
범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은 사회통제이론이 아니라 낙인이론의 주장이다.

14. 정답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67조).

15. 정답 ④

수용자에 대한 무기사용 사유(법 제101조)

-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16. 정답 ③

미결수용자는 분류심사위원회의 의결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11조).

- ①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06조 제2항).
- ②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96조 제3항).
-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시행규칙 제200조).

17. 정답 ④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은 물론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시행규칙 제120조).

18. 정답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① 보호소년의 분리수용 기준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고(동법 제8조 제2항),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은 분리수용 기준이 아니다.
- ② 근신 기간 중에는 텔레비전 시청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5항).
원내 봉사활동은 근신 기간 중 함께 부과되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3 제2항).

19. 정답 ④

부정기재심사 사유(시행규칙 제67조)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

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20. 정답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일반경비처우급은 외부직업훈련 대상자가 될 수 없다.